

24. 비전임교원임용규정

제정: 2009. 12. 2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의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비전임교원의 임용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비전임교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석좌교수 : 교회·교단·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한 기부금, 기탁금,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2. 명예교수 : 본교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우수하여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.
3. 초빙교수 : 본교와 국내·외 자매결연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과의 협정에 의하여 교육, 연구 및 학문교류 증진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4. 객원교수 : 교회지도자 및 교계 저명인사 또는 전문가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5. 겸임교수 : 외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, 그 직무내용이 본교에서 담당할 교육 및 연구내용에 적합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교 전임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교육·연구에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6. 특임교수 : 본인의 기탁금 또는 타 기관의 기금에 의해 조성된 재원으로, 학교발전에 공헌하도록 총장이 부의하는 교육 및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7. 대우교수 : 본교가 필요로 하는 학문 분야에 있어서 실적과 권위가 인정되는 자,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,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본 대학 교원에 준하는 자로서 무보수로 강연 또는 학생지도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8. 강의교수 : 강의를 전담하기 위하여 계약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9. 연구교수 : 교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로서 연구기금 유치 및 연구를 전담하기 위하여 계약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10. 외래교수 : 외래교수 관리 내규에 준한다.

제3조(직급) ① 석좌교수, 명예교수, 초빙교수, 특임교수, 대우교수, 강의교수 및 연구교수의 직급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석좌교수, 명예교수, 초빙교수, 특임교수, 대우교수, 강의교수, 및 연구교수로 통칭한다.

② 객원교수 및 겸임교수의 직급은 교육, 연구 및 기타 경력에 따라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구분한다.

제4조(자격) ① 비전임교원은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

② 비전임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석좌교수 :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문적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국내·외 학자, 평생 을 교육에 헌신한 저명한 교수 또는 본 대학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2. 명예교수 :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로 퇴직한 교수 중에서 그 재임기간 중 교육 및 학술상 업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. 단, 설립당시의 교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다.
3. 초빙교수 : 자매결연 대학 또는 국내·외 우수대학의 전임교원, 교육 및 공동연구의 목 적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되는 자, 국내·외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, 해당 전공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회지도자 및 교계 저명인사,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단체 추천교수 또는 기타 학문수준이 높은 국내·외 학자
4. 객원교수 : 학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해당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자
5. 겸임교수 : 공공기관, 연구기관 , 교회 또는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 재직하는 자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연구 및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
6. 특임교수 : 총장이 부의하는 교육 및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학교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
7. 대우교수 : 본교가 필요로 하는 학문 분야에 있어서 실적과 권위가 인정되는 자, 본교 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,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본 대학 교원 에 준하는 자로서 강연 또는 학생지도 등이 가능한 자
8. 강의교수·연구교수 : 전임교원 임용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

제5조(임용절차) ① 비전임교원(강의교수·연구교수·객원교수는 제외)은 교무처장(교무위원)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
② 강의교수와 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신규 임용절차에 따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비전임교원(강의교수·연구교수 제외)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 또는 추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1. 석좌교수 : 추천서, 이력서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2. 명예교수 : 추천서, 교육 및 학술에 관한 업적조서,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3. 초빙교수 : 추천서, 이력서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4. 객원교수 : 추천서, 이력서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5. 겸임교수 : 추천서, 이력서, 겸직동의서, 재직증명서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료
6. 특임교수 : 추천서, 이력서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7. 대우교수 : 추천서, 이력서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
④ 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은 계약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용기간, 급여내역, 강의 교과목, 연구과제명, 책임시간 및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임용계약서에 명기하여 야 한다.

⑤ 명예교수의 정원은 매 학년도 초 전임교원 정원의 10% 이내로 한다.

⑥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인사규정 및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적용한다.

제6조(임용기간) ① 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기간을 재계약하여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객원교수 및 겸임교수의 임용은 만 65세까지로 한다.

② 명예교수의 추대기간은 만 70세까지로 한다. 다만, 본인의 희망과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은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말에 자동적으로 면직되며,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재임용) 비전임교원을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처장(교무위원)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
제8조(보수) 비전임교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석좌교수 : 외부연구비로 충당하되, 연구과제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본인과 협의하여 연봉액을 정하여 매월 분할·지급한다. 다만, 특강 또는 강의를 담당할 때에는 담당시간에 따라 별도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명예교수 : 본 대학교 강사료 지급 내규에 따른다.

3. 초빙교수 :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및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4. 객원교수 : 임용직급과 강의시간 수에 따라 차등·지급한다.

5. 겸임교수 :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6. 특임교수·강의교수·연구교수 : 연봉액을 별도로 정한 후 매월 분할·지급한다.

제9조(의무) ① 비전임교원은 법인 정관 및 인사규정과 본 대학교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석좌교수는 본 대학교가 선정한 연구과제 수행에 전념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특강 또는 주당 6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③ 초빙교수·대우교수는 주당 9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.

④ 겸임교수는 주당 최소 2시간 이상 9시간 이하의 강의를 하여야 한다.

⑤ 강의교수는 주당 15시간을 책임시간으로 하고, 강의연구 및 학사업무 협조 등 전임교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⑥ 연구교수는 본 대학교가 선정한 연구과제 수행에 전념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특강 또는 주당 6시간(2강좌) 범위 내에서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⑦ 비전임교원은 재직기간 중에 수행한 연구실적물 발표에 본 대학교 교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한 연구실적물은 예외로 한다.

제10조(예우·신분) ① 비전임교원은 본 대학교의 도서관, 연구시설, 기타 교내 복지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전임교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.

② 비전임교원은 임기 중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법인 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

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임용자격을 상실하거나 과의 폐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(휴직)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.

제12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, 법인 정관 및 인사규정,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명예교수규정은 폐지한다.